브리딩 · 도그쇼 분양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에 따라 아래 개에 대해 브리딩 · 도그쇼 목적의 분양 계약을 맺는다.

매도인	골든스카이(Goldensky)켄넬 대표 임성완 · FCI 견사호 GOLDENSKY	**사업자등록번호**	293-07-02365
동물생산업	제4070000-037-2020-0017호	**동물판매업**	제4070000-045-2021-0029호
주소 · 연락처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450 · 010-8275-8754		
매수인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			
매수인 견사호		**소속 켄넬클럽**	KKF / 기타(　　)

품종	포메라니안	**성별**	수컷 / 암컷
이름(혈통서)		**모색**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동물등록번호**	
혈통서 번호		**마이크로칩 삽입일**	
부(父)		**모(母)**	
분양 목적	브리딩 / 도그쇼 / 브리딩 · 도그쇼	**인도 시 나이**	생후　　주

제1조 (개체)

이 개는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KKF)이 관리하는 혈통서 정보에 따라 매도인이 분양하고 매수인이 분양받는다. 개는 위 정보로 식별한다.

제2조 (분양가 · 지급 · 운송)

분양가	일금　　원정	**예약금**	50만원 (　년　월　일 입금)
잔금	일금　　원정 (계약일 지급)		

1. 분양가는 이 개의 혈통 · 퀄리티 · 브리딩 및 도그쇼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다. 매수인은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분양가 전액을 지급한다.
2. 예약금은 예약 후 이 개를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지 않으므로 환불하지 않는다.
3. 직접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매수인이 운송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운송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3조 (분양 목적과 조건)

1. 매수인은 브리딩 · 도그쇼 목적으로 이 개를 분양받는다. 매도인이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분양 시점에 이 개와 그 부모에게 번식에서 제외될 만한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뿐임을 매수인은 이해한다. 제8조의 번식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매수인은 제8조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2. 매수인은 이 개가 KKF(해외는 매수인 국가의 켄넬클럽)가 번식에 요구하는 의무와 조건을 모두 마친 뒤에만 번식에 쓴다.
3. 제2항의 조건을 마치지 않은 채 번식에 쓰거나, 혈통서 없는 새끼를 낳게 한 경우 계약 위반이다. 매수인은 위약벌로 분양가의 400%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매수인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해도 예외로 하지 않는다.
4. 유전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이 개가 번식에서 무엇을 낳을지 보증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태어난 새끼에게 번식 제외 사유가 있으면 그 새끼를 브리딩 · 도그쇼 목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자신의 번식에도 쓰지 않는다.
5. 이 개가 도그쇼나 경기에 나가면 매수인은 그 결과를 매도인에게 알린다. 매도인은 이 개의 결과를 언제든 웹사이트 · SNS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사진에 사람이 나오면 매수인은 그 사람의 공개 동의를 받는다. 매도인은 도그쇼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6. 이 개는 상태가 좋고 훈련과 준비가 된 경우에만 도그쇼나 번식 자격 심사에 내보낸다.

제4조 (인도 시 상태)

1. 매수인은 계약 시점에 직접 확인한 상태 그대로 개를 인수한다. 매수인은 이 개가 나이에 맞는 견종 특유의 성격을 지녔고 눈에 보이는 문제나 부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수컷은 고환 두 개가 만져지고, 교합은 FCI 견종표준(제97호 저먼 스피츠 · 포메라니안)에 맞으며, 개는 활발하고 잘 관리되어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다.
2. 예방접종　회(최종　년　월　일), 구충　회를 마쳤다. 매수인은 수의사가 권하는 시기에 남은 접종을 마치고, 면역이 생길 때까지 감염 위험이 없는 곳에서만 기른다.

3. 분양 당시 건강 상태 · 병력: _____

제5조 (부모견 건강 검사 공개)

매도인은 부모견에 대해 실시한 검사를 아래에 적고 그 서류를 보여 준다. **실시하지 않은 검사는 「미실시」로 적는다.**

검사	부(父)	모(母)
슬개골 검진		
심장 검진		
안과 검진		
유전자 검사		

매수인은 이 개가 매수인의 기대에 얼마나 맞을지는 보호자의 올바른 교육과 관리에 달려 있음을 이해한다. 매도인은 이 개를 바르게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제6조 (서류)

1. 매도인은 KKF 혈통서와 명의이전 서류, 동물등록 변경에 필요한 서류, 건강상태 · 진료 사항 증명서류(동물보호법상 교부 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
2. 매수인은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한다.

제7조 (사육 안내)

매수인은 이 견종에 필요한 관리 · 급여 · 사육 방법을 안내받았다. 매도인은 접종이 끝나 면역이 생기기 전에는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과 접촉시키지 말라고 안내하였다. 안내와 다르게 길러 생긴 결과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개를 차 안에 혼자 두거나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

제8조 (보증)

1. 매도인은 동물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지킨다. 매도인은 동물생산업 ·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이 개를 분양한다.
2. **인도 후 15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15일 이내 원인 모를 긴급한 폐사 시 동종 교환. 7일 이내 파보 · 홍역 발생 시 분양가 환급, 코로나 발생 시 켄넬에서 회복시켜 인도(관리 중 폐사 시 동종 교환). 수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초기 검사비는 매수인 부담.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피해는 제외한다.
3. **번식 부적합 판정**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래 사유로 수의사가 번식 부적합으로 진단하면, 매수인은 아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 사유: 슬개골 탈구 3기 이상, 선천성 심장질환, 잠복고환(수컷)
   - 가) 매도인이 분양가의 20%를 돌려준다(진단서 확인 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송금).
   - 나) 매도인 소유 · 매도인과 함께 사는 종견 중 매수인이 고른 종견과 무료 교배 1회.

   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며, 비만 · 사고 · 관리 소홀로 생긴 경우와 제4조 제3항에 고지한 질환은 제외한다.
4. 경미한 문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9조 (자연 리스크)

아래는 견종과 개체의 특성으로, 부모견에게 이상이 없어도 생길 수 있으므로 제8조 외에는 보증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한다.

- 교합 이상 · 결치, 견종표준과 다른 크기 · 체중, 슬개골 탈구(3기 미만), 기관 허탈, 탈모증(Alopecia X), 척추 · 디스크 질환
- 암 — 언제,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알 수 없으므로
- 알레르기 — 언제,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알 수 없으므로
- 정성껏 돌봐도 생길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환: 지아디아, 콕시듐 등 원충 감염

제10조 (동물 보호)

1. 매수인은 개를 기르는 것이 약 15년에 걸친 책임임을 이해하며, 매도인은 이 개가 평생 안전하게 길러지기를 바란다.
2. 이 개를 펫숍 · 경매장 · 동물 실험시설에 넘겨서는 안 되며, 유기하거나 떠돌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매도인은 대가 없이 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이 개로 더 이상 번식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먼저 매도인과 상의한다. **매도인은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4. 매수인이 이 개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매도인은 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의 사육과 관련해 행정 절차가 시작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알린다.
5. 매수인이 이 개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으면 매도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대가 없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개는 매도인의 소유가 된다. 분양가는 환급하지 않는다.

6. 이 조를 위반하면 계약 위반이다.

제11조 (사후 연락)

양 당사자는 분양 후에도 전화 · 카카오톡 · 왓츠앱 · 이메일로 연락을 이어 간다. 건강 · 사육 문제는 SNS 댓글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한다. 매수인은 언제든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1. 개에 대한 위험은 인도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수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매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이를 어겨 생긴 손해는 배상한다. 사실에 근거한 후기와 의견은 제한하지 않는다.
3. 매도인은 이 계약서에 적힌 것 외의 보증을 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5.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나는 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서명함으로써 이를 나의 의무로 인정합니다.

계약일 20 . . .

매도인	골든스카이켄넬 대표 임성완	(서명)
매수인		(서명)